

당나라의 유학생 관리체제 연구

이 해 원*

<목 차>

1. 서론
2. 당대 교육과 유학생
 - 2.1 당대 교육제도와 기구
 - 2.2 유학생의 종류
3. 당대 유학생의 권리와 의무
 - 3.1 유학생의 대우
 - 3.2 유학생의 정치 권리
4. 결론

1. 서론

당왕조는 대외 개방정책을 실행하여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 먼 아랍, 동남아시아 등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외교 관계를 맺거나 유학생을 파견하여 당나라에 들어와 중국 문명을 배웠으며 승려는 불교를 배우고 상인은 상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당왕조는 독특한 법률체제를 제정하여 유학생들을 관리하였다.

동한(東漢) 명제(明帝)가 중원(中元) 2년(57년)에 왕위를 계승하여 친히 경연에 참여하여 경전을 읽고 학자들과 질문하고 논박하였는데 후에 공신의 자손을 위해 학교를 세워 경전을 배우게 했고, “호위 금군(禁軍) 이상의 관직은

* 고려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학부 교수(hhaewonn@korea.ac.kr)

모두 《효경(孝經)》을 익히도록 했으며, 흉노도 자제를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게 하였다”¹⁾라고 하였다. 이것이 정사에 외국 유학생이 중앙의 학교에서 공부한 최초의 기록이다. 수(隋)왕조 대업(大業) 4년(608년), 수양제는 배세청(裴世清)을 왜국(倭國)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귀국할 때 왜왕이 학생과 유학생(留學僧) 8명을 파견하여 중국에 입국하도록 하였다.²⁾

비 한족 국가가 유학생을 파견하여 중국의 학교에 입학하였던 것이 유행하던 때는 당왕조 때였다. 이러한 현상의 계기가 된 것은 당태종(唐太宗)이 문교(文教)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당대 각종 전장(典章) 제도의 연혁과 변천을 기록한 사서 《당회요(唐會要)》에 “정관(貞觀) 5년 이후 태종은 여러 차례 국학(國學)과 태학(太學)을 시찰하고 교사를 1,200칸을 증설하고 국학, 태학, 사문(四門) 기구에도 학생을 증원하였고 서과(書科)와 산과(算科) 등에 박사를 설치하였는데 모두 3,260명이었다. 고려, 백제, 신라, 고창(高昌), 토번(吐蕃) 등 주변 국가의 군장(君長)의 자제도 국학에 파견하였는데 국학 내에는 모두 8천여 명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국학의 흥성은 이전에는 없던 일이었다”³⁾라고 하였다.

태종 때 국자감 내의 생원의 수가 8천여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외국 왕실 자제로 구성된 유학생 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살펴보면 일본 유학생의 경우, 태종 정관 4년(630년)에서부터 소종(昭宗) 건녕(乾寧) 원년(894년)까지 200여 년 동안 입당한 유학생 총수는 149명이었다.⁴⁾ 《당회요》의 기록

1) 《後漢書》 卷79 <儒林列傳>. 불교가 중국에 전래하기 시작한 시기의 명제는 班超를西域에 파견하여 鄯善, 于闐 등지의 北匈奴의 세력을 격파하고 都護를 설치하였으며 이때부터 서역의 여러 이민족 국가들이 그들의 자제를 중국에 파견하여 서역이 한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끊어진 지 65년 만에 다시 통하게 되었다.

2) 《日本書紀》 卷22 <豐御食炊屋姫天皇>에 “推古天皇 15년 秋 7월, 小野臣妹子가 大唐에서 돌아왔다. 大唐의 사인 裴世清, 下客 12인이 妹子臣을 따라서 筑紫에 왔다. 難波吉士雄成을 보내 大唐의 손님 裴世清들을 불렀다. 唐의 손님을 위하여 다시 難波의 高麗館 위에 新館을 지었다”라고 하였고, “9월, 唐의 사신 裴世清이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이때 唐國에 보낸 이는 學生…… 學問僧……등, 모두 8인이었다”라고 하였다. 田沼新 譯, 《完譯 日本書紀》, 388-390쪽. 汪向榮, 夏應元 編, 《中日關係史資料匯編》, 51쪽.

3) 《唐會要》 卷35 <學校>. 《唐會要》(上), 739쪽.

4) 木宮泰彥 著, 胡錫年 譯, 《中日文化交流史》, 126-149쪽.

에 의하면, 개성(開成) 2년(837년) 3월에 “발해국(渤海國)의 하정(賀正) 왕자 대준명(大俊明)을 따라 중국에 들어온 학생은 모두 16명이었다”⁵⁾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비해 외국에서 중국에 들어왔던 유학생은 신라가 가장 많았다. 국자감 내에는 심지어 전문 ‘신라마도(新羅馬道)’⁶⁾가 있을 정도였다. 《당회요》에 개성 2년(837년), “신라는 숙위(宿衛) 왕자를 파견하여 입국하였는데 전례에 따라 허락하였고 중국에 머물며 공부한 학생과 먼저 살던 학생을 합쳐 모두 216명이었다”⁷⁾라고 하였다. 중국 사서에도 개성 5년(840년) 공부를 끝내고 귀국하는 신라 유학생의 수에 대해 기록하였는데, “홍려시(鴻臚寺)에 학적(學籍)을 둔 질자(質子)와 학생은 기일 만료되어 105명 모두 귀국하였다”⁸⁾라고 하였다.

유학생이란 용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인데 일본인이 만든 말이었다. 일본의 편년체 역사서 《일본서기》 중에 널리 사용되었다. 유학생은 일본이 파견하여 당왕조에 입국한 학생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당왕조에서는 외국의 상인을 호상(胡商)이라고 하였는데, ‘호(胡)’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사람들이 서역 사람을 가리켜서 부르던 호칭이었다. 서역의 이민족 상인들이 장안에 와서 고리대금업이나 보석 장사를 하여 폭리를 취했다고 한다. 두보(杜甫)의 시 <염예(鹽澗)>에 “뱃사공과 어부는 노래 부르며 돌아오고, 장사꾼과 외국 상인들 옷깃 가득 눈물만 적시네”⁹⁾라고 읊었는데, 외국 상인 호상(胡商)은 험준한 삼협(三峽)을 지나 성도(成都)에서 보석 장사를 하는 모습을 묘사하였고, <해민(解悶)> 시에서는 “호상이 이별하며 양주로 내려가, 서릉의 옛 역참이 생각나네”¹⁰⁾라고 하여 역참에서 알게 되었던 호상과의 만남을 표현하였다. 당나라와

5) 《唐會要》(上), 779쪽.

6) 崔致遠의 <遣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에 “태종이 무력으로 천하를 평정했으나 文德으로 海內를 편안하게 하려고 學舍 수백 칸을 건립하고 사방의 생도를 모아들이어 얼마 후 여러 藩邦이 사모하여 그 군주가 제자를 보내어 수업하기를 청하므로 허락하였습니다……요즈음 國子監 안에 오로지 新羅의 馬道가 四門館 北廊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7) 《唐會要》 권36 <附學讀書>. 《唐會要》(上), 779쪽.

8) 《舊唐書》 권199 <東夷傳 百濟>. 《舊唐書》(10), 5339쪽.

9) “舟人漁子歌回首, 估客胡商淚滿襟.” 《全唐詩》(7冊), 2505쪽. 鹽澗은 長江 三峽 가운데 瞿塘峽 입구의 암초이다.

교류한 외국과 이민족 지역이 3백여 곳이었다고 하는데¹¹⁾ 이렇게 페르시아, 아라비아, 서역, 회홀(回鶻), 남월(南越) 등 이역 땅 이민족들을 당왕조 사람은 호인(胡人)이라고 불렀다. 호인의 수도 많고 신분도 달라서 몰락하여 망명한 왕후(王侯), 각국의 질자, 사절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입국한 상인,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들어온 승려, 악공(樂工), 기예(技藝)를 파는 사람, 곤륜노(崑崙奴)¹²⁾ 등과 여행객들도 포함되었다. 호인 중에는 상인이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당제국에 와서 장사활동을 하는 이민족 상인을 당나라 사람은 호상, 상호(商胡), 고훈(賈胡), 번객(蕃客)이라고 불렀다. 당대에 외국 상인들이 상업 활

- 10) 12수 가운데 2번째 시. “胡商離別下揚州，憶上西陵故驛樓。” 《全唐詩》(7冊), 2517쪽.
- 11) 《唐六典》 권4, <尙書禮部> <主客郎中>. 《역주 당육전》(상)에 “주객낭중은 여러 외국의 조빙(朝聘)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사방의 국가 가운데 조공을 보낸 이후, 서로 싸우다 망하고 (당조)에 죄를 얻어 멸망한 나라가 대개 3백여 국이다. 현재 남아 있는 나라는 70여 국이다”라고 하면서 “돌궐, 일본, 신라, 토번, 천축, 임읍국, 소록국, 미국 조국, 사자국 등이며 그 조공의 의례, 향연의 수, 고하의 등급, 왕래의 규모는 모두 흉려시의 지침에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462-463쪽.
- 12) “곤륜(崑崙)”이란 말은 고대 중국에서 곤륜산 밖의 검은 색의 물건을 가리켰다. 당대 사람은 흑색 피부를 가진 사람을 곤륜인이라고 불렀다. 《舊唐書》 권197 <南蠻傳>에 “임읍(林邑) 남쪽의 곱슬머리에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곤륜이라고 불렀다”라고 하였는데 이 흑인은 대부분 남양군도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으로 곤륜은 일반적인 명칭이었으므로 한 지역 국가의 사람을 가리키지는 않았다. 샤퍼(E. H. Schafer), 《사마르칸트의 황금 복숭아: 당대의 박래품 연구(The Golden Peaches of Samarkand: A Study of Tang Exotics)》, 제2장 <사라>편 중의 <노예>에 말레이반도 혹은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은 ‘승기(僧祇 Zangi)’, 즉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잔지바르(Zanzibar) 흑인을 말한다고 하였다. 《唐代의 外來文明》, 103-104쪽. 승기(Zangi)는 페르시아어 ‘흑인 해안’이란 뜻의 Zangi-bar에서 유래하였다. 임읍은 유송(劉宋) 영초(永初) 원년(420년)에 송무제(宋武帝)가 정벌하여 조공을 바쳤고, 수나라 대업 연간에 정복하여 오늘날 베트남 북부에 임읍군을 설치했으며, 당왕조 지덕(至德) 연간(756-757)에 환왕(環王)이라고 개칭하고 후에 점성(占城 Champa)에 도읍을 정했으며, 명대에는 안남(安南)에게 멸망하였다. 송대 주거비(周去非)의 《嶺外代答》 권3에 “서남 해상에 곤륜승기국(崑崙屠期國)이 있고 큰 바다에 섬들이 줄지어 있는데 바다 섬에는 야만인들이 많고 피부가 검고 곱슬머리인데 먹 을 것으로 유혹하여 사로잡았다가 다시 각 지역의 노예로 팔았다”라고 하였다. 작은 섬들이 연속적으로 줄지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말레이반도나 인도네시아 여러 섬에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대부분 팔려서 당나라에 들어왔는데 중국 땅에 온 이후에 악무를 배워 사람들의 오락에 동원되었고 노복이 되어 주인을 위해 사역하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곤륜노라고 불렀다.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의 국가에서 조공으로 곤륜노를 바쳤는데 공품(貢品)으로 주로 여자가 바쳐졌고 당시의 교통 사정으로 볼 때 흑인은 희귀했으므로 곤륜노의 가격이 비싸서 곤륜노를 보유한 사람은 부자의 상징이었다. 현재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곤륜노 도상은 대부분 상반신은 나체이고 하반신은 짧은 바지를 입고 있으며 눈이 동글고 크며 곱슬머리인 것이 특징이다.

동을 하는 것에 대해 태종과 같은 황제를 포함한 당왕조 정부는 대외적으로 개방적 태도를 견지하여 허가하였으나 고창왕(高昌王) 국문태(麴文泰)가 당나라 조정에 들어가자, 서역의 여러 나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당나라에 공물을 바쳤고 태종은 국문태의 신하 염달홀간(厭怛紇幹)을 보내 영접하게 하니, 직간으로 유명한 위징(魏徵)은 간언하길, “상인들이 왕래하며 변방 사람과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허락한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빈객으로 그들을 대우한다면 중국에는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¹³⁾라고 말했다. 당조정은 외국 상인과의 교시(交市)는 허락하고 외국 사신이 당나라에 입국하면 모든 비용을 당조정에서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어 조정의 대신이 “변방에 사는 백성들이 소모되는 폐단이 있다”라고 하며 민폐를 걱정한 것이다. 본 논문은 신라, 발해와 일본을 포함한 외국 유학생의 종류와 그들에 대한 당정부의 정책 가운데 여러 방면에서의 혜택뿐만 아니라 재중 기간 중 유학생의 정치, 외교 및 민사적 권리에 관한 연구이다.

2. 당대 교육과 유학생

2.1 당대 교육제도와 기구

당대 국자학(國子學), 태학(太學), 사문학(四門學), 율학(律學), 서학(書學), 산학(算學) 등의 학교가 있었는데 육학(六學)이라고 하였다. 국자학, 태학, 사문학은 유가 경전, 율학은 《당율(唐律)》과 같은 법률, 서학은 자서(字書), 산학은 산수 저작인 산경(算經)을 배웠다.

당왕조 수도 장안에는 세 곳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첫째는 상서성(尙書省) 예부(禮部)에 속한 국자감(國子監)으로 국립대학에 해당하고, 둘째는 문

13) 《資治通鑑》 <唐紀>(9). 《자치통감》(20), 546-547쪽.

하성(門下省)에 속한 홍문관(弘文館)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보통귀족대학에 해당하며, 셋째는 황태자궁(皇太子宮)에 예속된 숭문관(崇文館)이다. 후자의 두 학교 학생은 반드시 황족의 친척이거나 고관대작의 자제여야 입학 자격이 주어졌다. 다만 첫 번째 국자감만이 낮은 등급의 관료 자제들도 입학할 수 있었다. 태종 때 국자감의 학생이 3천여 명이었고, 주변 국가인 고구려, 신라, 백제, 발해국, 일본의 유학생들도 있었다.

당왕조 관학에서 사용한 교과서는 주로 유가의 오경, 즉 《시경(詩經)》, 《서경(書經)》, 《역경(易經)》, 《춘추(春秋)》, 《예경(禮經)》이었다. 국자감의 최고 관직은 총장에 해당하는 제주(祭酒)인데 공영달(孔穎達)이었으며 그는 다섯 경전에 해석을 달아 《오경정의(五經正義)》를 편찬하였다.

고종(高宗) 때 662년에 동도(東都) 낙양(洛陽)에도 국자감을 설립하여 장안의 국자감과 합하여 양감(兩監)이라고 하였다. 태학의 교사에는 박사, 조교, 직강(直講) 등의 몇 종류가 있었는데 조정에서 품급이 있는 관리였다. 박사는 경전의 종류에 따라 담당 과목을 정했으며 직강은 조교를 보좌하였다.

태학의 교사와 학생의 수는 정해져 있었는데 태학박사는 6인, 조교 6인, 학생은 500명이었다. 다른 관학도 마찬가지로었는데 국자감 박사 7인, 조교와 직강이 각각 5인, 학생은 300명이었다. 이러한 규정은 모두 《당육전》과 《당률》 등의 법률 조문에 기재되어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

교육행정의 직속계통 이외에 다른 행정부문, 예를 들면 태악서(太樂署), 태복서(太僕寺), 태의서(太醫署), 태복서(太僕署), 사천대(司天臺) 등도 박사를 설치하고 학생을 모집했으며 도제를 두는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강의실에서의 학습과 실제적 현장의 작업을 통해 직업 훈련을 하여 교육, 연구와 행정 삼자를 결합하였다.

2.2 유학생의 종류

사서에 기록된 유학생과 관련이 있는 용어를 분류하면 다음의 세 종류로 나뉜다.

(1) 학생(學生), 청익(請益), 환학(還學), 유학(留學), 학문승(學問僧)

유학생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일본에서 구분하였다. 일본 정사 《일본서기》에 당나라에 들어가 불교를 배우고 경전을 구하는 승려를 ‘학문승’이라고 하였다. 일본의 저명한 학문승으로는 엔닌(圓仁), 겐보(玄昉) 등이 있었다. 중국의 세속문화를 배우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하였는데 기비마기비(吉備眞備), 아베나가마로(阿倍仲麻呂)¹⁴⁾ 등이다.

유학생의 중국에서의 학습 목적과 기간이 서로 달라서 유학생을 여러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학생은 관학에 들어가 경전과 역사 그리고 예의를 배우는 일반 학생을 말한다. ‘청익’은 전문적으로 한 가지 기예(技藝)만을 배우는 유학생을 말하며, 중국으로 오기 전에 이미 본국 일본에서 전문 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 중국에 가서 전문가에게 청하여 그 분야의 도움을 받는다는 뜻에서 ‘청익’이라고 하였는데, 본래 형명학(刑名學)을 배운 대하장강(大河長岡), 음양청익생(陰陽請益生) 춘원옥성(春苑玉成), 역법(曆法)에 뛰어난 도기직웅정(刀岐直雄貞)이다. ‘환학’은 단기 유학생을 말하는데 대체로 1,2년 정도 공부

14) 《舊唐書》 <東夷傳>에 “사신 중에 한 사람인 조신중만(朝臣仲滿)이 중국의 문물(風)을 사모하여 머물러 떠나지 않았다. 이름을 고쳐 조형(朝衡)이라고 하고 출사하여 좌보궐(左補闕), 의왕우(儀王友)를 지냈다. 형(衡)은 경사에 50년 동안 머물렀는데, 서적을 좋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도 머물러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舊唐書 外國傳 譯註》, 627쪽. 朝臣仲滿이 바로 阿倍朝臣仲麻呂, 즉 아베나가마로이다. 朝衡은 晁衡이라고 하는데, 李白은 <哭晁卿衡>이란 시에서 “달 밝은 날 돌아가지 못해 푸른 바다에 빠졌다(明月不歸沈碧海)”라고 읊으며 유학 온 아베나가마로(698-770)는 견당사를 따라 당나라에 왔다가 문학관련 관직에서 근무하여 당대 시인 李白, 王維, 儲光羲 등과 交遊하였다. 일본으로 돌아가던 중 풍랑을 만나 베트남에 표류하였는데, 이후 다시 장안으로 돌아와 후에 중국에서 죽었다. 그러나 이백은 그가 표류하다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조문하였다. 儀王友란 儀王이 玄宗의 12번째 아들 瀛가 儀王이다. 王友는 王과 친구처럼 지낸다는 뜻으로 王府의 屬官으로 從5品下이다.

하고 원래 사절단을 따라 귀국하였다. 유학은 장기 유학생으로 당왕조에 체류하며 공부에 전념하고 기일이 만기가 되면 후에 오는 사절단을 따라 귀국하였다. 학문승은 일반적으로 배정되어 당왕조 경내의 불교사원을 순례하며 불교를 배우고 불경을 구하였다.

(2) 질자(質子), 숙위생(宿衛生)

문종(文宗)은 개성 원년(836년)에 칙령을 내려 “신라 숙위생과 왕자 김의종(金義宗) 등 머물며 살기를 청하는 학생과 옛 관례에 따른 두 사람에게 옷과 양식 지급을 허가했다.”¹⁵⁾ 당왕조에 와서 머물며 숙위하는 왕자 출신의 질자와 학업하는 숙위학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현종은 개원 2년(714년) 2월에 신라 왕자 김수충(金守忠)이 와서 조공하고 숙위로 머무르니 집과 비단을 하사하고 총애하였다.¹⁶⁾

숙위를 숙위 질자와 숙위생(숙위학생)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외교와 정치 색채가 비교적 강하고 후자는 문화 학습을 위해 당나라에 입국한 것을 말한다. 당왕조 정부는 외국 숙위학생에게 높은 예우를 해주는 동시에 중국 문화를 배우고 중화 문명을 수용할 기회를 주었다. 신룡(神龍) 원년(705년) 9월 21일, 칙령을 내려 “토번의 왕과 가한(可汗)의 자손은 경전을 배우려고 하니 마땅히 국자감에서 공부하라”¹⁷⁾고 하였다. 당왕조에 입국한 질자는 국자감

15) 《唐會要》 권36 <附學讀書>. 《唐會要》(上), 779쪽. 숙위란 궁궐을 숙직하여 지키다는 뜻인데,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자국의 왕자나 귀족자제들을 중국 조정에 보내 조공하고 侍留하면서 황실의 권위를 높여주고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해진 외교의 한 형태였다. 신라의 숙위는 진덕왕 2년(648년)에 김춘추의 주선으로 그의 아들 金文王이 처음으로 임명된 후, 경문왕 16년(876년)에 金因에 이르기까지 16명이 확인되는데, 당시 숙위는 조공사(朝貢使), 인질, 문화사절, 무장 및 고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인질은 질자(質子)라고도 한다.

16) 《冊府元龜》 卷996 <外臣部> <納質>. 《冊府元龜》(十二), 11694쪽 상단. 김수충은 성덕왕 13년(714년)에 遣唐大監으로 당나라에 파견되어 숙위하였는데, 당현종이 집과 의복을 하사하여 총애하였을 뿐만 아니라 朝堂에서 연회까지 베풀어주었다. 그 뒤 717년에 귀국하면서 공자와 10哲 및 72제자의 圖像을 가지고 와서 성덕왕에게 바쳤고 이것은 곧 국학에 안치되었다.

17) 《唐會要》 권36 <附學讀書>. 《唐會要》(上), 778쪽.

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영태(永泰) 2년(766년), 국자감 제주(祭酒) 소흔(蕭昕)은 정월 29일에 조정이 질자, 숙위생의 학습에 동의하는 관련 조령을 반포하였다.¹⁸⁾

숙위생의 신분은 특수했는데 그들은 일정한 정치 사명을 짊어져서 한편으로는 명의상 중앙 군주의 시위 인원이지만, 실제로는 실제적인 파견 임무는 없었고 당왕조의 대우를 받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숙위생의 실제 임무는 숙위 기간에 기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중원의 문화를 습득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숙위생이 당왕조와 본국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사절이 되기도 하였다. 당왕조의 숙위 질자의 배양제도가 실제 효과를 얻은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토번 대신 중종(仲琮)은 “어린 나이에 질자로 중국에 들어와 태학생으로 공부하여 문자를 익혀 한자에 통달하였다”¹⁹⁾ 그의 기록은 정사에도 보이는데, “토번이 대신 중종을 파견하여 중국에 입국하였다. 중종은 어려서 태학에서 공부하여 책을 읽을 줄 알았다”²⁰⁾ 이것으로 볼 때 토번왕국의 질자 중종은 어린 나이에 숙위 질자의 신분으로 태학에 입학하여 공부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일본 등 여러 나라 모두 자제를 파견하여 중국에 입국하여 공부하였다.²¹⁾ 신라 유학생이 당왕조에서 공부한 유학생 가운데 가장 많았다.

숙위하는 질자와 학생 모두 연한은 서로 달랐다. 왕자 신분인 질자의 경우는 고정적인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개성(開成) 2년(836년)에 왕자 김의중은 이듬해에 귀국했지만, 오랫동안 체류한 질자도 있었다. 《삼국사기》 권44 <김인문전(金仁問傳)>에 보면 숙위 질자의 신분으로 영휘(永徽) 2년(651년) 23세에 입당하여 연재(延載) 원년(694년)까지 43년 동안 7차례

18) 《唐會要》 권36 <附學讀書>. 《唐會要》(上), 778-779쪽.

19) 《冊府元龜》 권962 <外臣部> <才智>. 《冊府元龜》(十二), 11322쪽 상단. 여기에는 토번이 다시 중종을 함형(咸亨) 3년에 사신으로 당나라에 파견하였다고 하였다. 함형은 唐高宗 때 연호로 함형 3년은 672년이다.

20) 《新唐書》 권216 <吐蕃傳>. 《新唐書》(12), 6076쪽. 《新唐書 外國傳 譯註》(上), 265-266쪽. “정관 8년(634년)에 토번이 사신을 보내 내조하였고, 정관 15년(641년)에 태종은 종실의 딸인 文成公主를 弄贊의 처로 삼게 하였다. 여러 豪族의 자제를 국자감에 입학시켜 詩書を 익히게 하였다”라는 기록은 255, 258-259쪽에 있다.

21) 《唐語林》 권5 <補遺>. 《唐語林校證》(下), 459쪽.

나 입당하였고 당나라에서만 22년을 살았으며 당나라에서 일생을 마쳤다고 하였다.²²⁾ 김윤부는 질자의 신분으로 당나라에 23년을 살았다.²³⁾ 반면에 숙위학생은 당나라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통상 10년이였다.²⁴⁾ 최치원은 6년의 학업을 완성하여 본인의 학업 능력과 재주 덕분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10년이란 규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3) 번객(蕃客), 호객(胡客), 화외인(化外人)

상기 두 종류의 인원 이외에 사료의 기록에 ‘번객’, ‘호객’과 ‘화외인’ 세 용어와 유학생 사이의 관계도 비교적 밀접했다. 그 가운데 당대 사료 문헌 중에 ‘번객’이란 용어는 그 빈도수가 많다. 예를 들면 대력(大曆) 14년(779년) 7월에 “홍려시의 초청으로 번객이 장안에 들어오는데 각자 본국의 옷을 입었다”²⁵⁾ 사서 중에 번객은 이민족 정권이 파견하여 중국에 입국하여 공물을 바친 사절을 말한다. 당대 사료 중의 번객(蕃客), 번객(藩客), 호객은 동의어다. 《신당서》에 정관(貞觀) 20년(647년) 당태종이 조서를 내려 “제사, 표소(表疏), 번객(藩客), 병마(兵馬), 숙위 등에 관해서는 듣기는 하겠지만 모두 황태자에게 맡긴다”²⁶⁾라고 하였다. 여기에서의 ‘번객’이란 용어는 《자치통감》에 태종 정관 2년의 ‘호객’에 대한 호삼성(胡三省)의 주(注)에서 “호객이란 사이(四夷)에서 입조하여 공물을 바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여 번객과 호객은 대체로 같아 중국 주변의 이민족 정권이 파견하여 당조정에 들어간 사자로 그 가운데 사이의 왕, 숙위 질자, 사절과 유학생이 포함되었다.

“덕종(德宗) 정원(貞元) 3년(787년)에 재상 이필(李泌)은 호객 가운데 장안

22) 강무학 역해, 《삼국사기신강》-연표·열전·잡지편-, 221-224.

23) 《冊府元龜》 권996 <外臣部> <納貢>.

24) 《東史綱目》 권5(상) 진성여주 3년, 唐昭宗 龍紀 元年(889년)의 기록에 崔承祐를 당나라에 보내 유학시켰다. 신라는 당에 항상 왕자를 보내 숙위하고 또 학생을 보내 태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닦게 하며, 10년 연한이 차면 본국에 돌아오게 하고 다시 다른 학생을 보냈는데, 입학하는 자가 많을 때는 1백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였다. 《東史綱目》(III), 민족문화추진회, 1978, 112쪽.

25) 《舊唐書》 권12 <德宗紀>. 《舊唐書》(10), 322쪽.

26) 《新唐書》 권2 <太宗紀>. 《新唐書》(11), 45쪽.

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을 알고 있었는데, 혹은 40여 년이 되어 모두가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으며, 밭과 집을 매입하고 모든 질자가 이익을 취하여 편안하게 살아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 명령을 내려 호객들 가운데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여 그에 대한 (당조정의) 공급을 중단하게 하였다. 무릇 4천 명을 찾았고 장차 그들에 대해 공급을 중단하려 하였다.”²⁷⁾ 또 “회흘 사람으로 먼저 장안에 남아 있는 사람은 항상 1천 명이었는데 외국 상인으로 거짓으로 복종하여 한족과 섞여 사는 사람은 두 배나 되었고, 정부에서는 날마다 익힌 음식과 날음식을 주었는데, 재산을 늘리고 집과 상점을 열었고, 많은 이익이 모두 그들에게 돌아갔으며, 날로 제멋대로 행동하며 탐하고 횡포해도 관리가 감히 묻지를 못했다.”²⁸⁾ 이 두 기록으로 볼 때 상당한 수의 호객이 당나라에 거주했고 그들의 생활은 안락하고 편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처자식이 있고 밭과 집이 있어 이미 당왕조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권도 누려서 당조정에서 계속 제공된 생활 보조를 받아 신분의 지위가 보통의 호상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화외인’이란 중화, 즉 중국 이외 지역 사람을 뜻하는데, 《당률소의(唐律疏議)》 중에서 해석하길, “화외인은 변이(蕃夷)의 나라에서 별도로 세운 군장(君長)을 가리키는데 각자 풍속이 다르고 제도와 법률도 달랐다”²⁹⁾라고 하여 ‘화외인’은 중원의 중국 왕조 이외의 중원 주변 국가의 이민족 사람을 말한다. 화외 지역은 당왕조의 정책과 법령이 실행되지 않고 자기만의 풍속과 법을 가지고 있어 번객, 호객과 기타 이민족 정권의 보통 사람을 포함하였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유학생이란 중국 주변 국가의 비 한족이 ‘칭익’, ‘환학’, ‘학문승’ 등의 신분으로 중국에 와서 공부한 학생을 말하며, 동시에 관학에서 공부한 숙위생을 포함하였다. 유학생의 신분 지위는 복잡한데 한편으로 유학생의 기본 신분은 화외인이고 그들은 당왕조 경내에서 당률에 따라 화외인의 일정한 규정을 준수하며 상응하는 법률 권리를 향유하고 또 상응하는 법률

27) 《資治通鑑》 권232 <唐紀> (48), 《자치통감》(24), 485쪽.

28) 《資治通鑑》 권225 <唐紀> (41), 이 기록에는 胡族 商人을 商胡라고 하였다.

29) 《唐律疏議》 권6 <名例>, 《譯註 唐律疏議》(I)-名例編-, 342쪽.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학생은 당조정의 수용하는 번객, 호객이 되어 그들의 신분 지위는 일반적인 화외인에 비해 비교적 높아서 당조정에 제공하는 대우를 받았다. 최치원(崔致遠)의 <신라왕을 대신하여 수령 등을 파견하여 입조하게 한 장문(遣宿衛學生首領等入朝狀)>에 “특별히 홍려시에 분부를 내리되, 용기(龍紀) 3년(891년 진성여왕)에 하등극사(賀登極使)인 판관검교(判官檢校) 사부낭중(使司郎中) 최원(崔元)을 따라 입조한 학생 최영(崔羹) 등의 사례에 의거, 경조부(京兆府)에 지시해서 매달 글 읽을 양식을 지급하게 하고, 이와 함께 겨울과 봄에는 계절에 맞는 옷을 은사(恩賜)해 주시길 청합니다”³⁰⁾ 유학생은 당나라로부터 본업인 학습뿐만 아니라 생활면에서까지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2.3 당대 유학생의 권리와 의무

유학생 신분의 번객은 대부분 주변 국가의 왕실 귀족자제를 말한다. 그들의 주요 의무는 중국 문명을 배우고 전파하는 데 있었다. 반면에 당조정은 그들에게 입구부터 귀국까지 특별한 대우를 하였다.

(1) 유학생의 대우

① 유학비 면제

당왕조 국자감의 정식 생도 자격을 갖춘 학생은 입학과 숙식이 면제되었다. 유학생과 중국 본토 학생은 모두 입학이 면제되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학습 기간은 서로 달랐고 학습 장소도 국자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학기가 짧은 유학생은 홍려사에서 공부하도록 조정에서 배정하였다. 일본의 견당사가 내조하면 조정에서는 “개원 초에 다시 사신을 보내어 내조하였다. 그리고 유사(儒

30) 최치원 지음, 이상현 옮김, 《고운집(孤雲集)》, 한국고전번역원, 2009, 252쪽.

士)가 경전을 가르쳐줄 것을 청하였다. 사문조교(四門助教) 조현묵(趙玄默)에게 명하여 홍려시에 나아가 이들을 가르치도록 하였다”³¹⁾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였다.

② 도서 구입비와 생활 보조

지방관의 신분 검사를 마친 후 유학생이 당왕조 국경에 진입한 때부터 기본적으로는 의식주 일체를 당왕조가 부담하였다. 일본 유학생 엔닌(圓仁)은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의 기록에 당조정이 그에게 생활 보조를 하였다고 하였다. “6월, 주(州)의 관리가 천자의 칙에 따라 양주(揚州)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녹(祿)을 주었다. 관찰사의 공문을 살펴보니 이르기를 ‘윤정월 2일의 칙에 준하여 조공사 수행원으로 장안에 가서 (아니한) 자 270명에게 비단을 준다. 사람마다 5필씩 합계 1,350필이다. 이는 정원 21년(805년) 2월 6일의 칙에 준하여 사람마다 각각 비단 5필씩 주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구례(舊例)에는 스님에게 녹을 준 예가 있지 아니하였다. 이번에 녹을 줄 때는 스님 등에도 주었다. 단지 입경하지 아니하고 잔류한 자에게만 지급하였다. 판관 이하 선원 이상의 사람마다 각각 5필씩 하사하고 그 위에 다시 많고 적음이 없었다”³²⁾라고 하였다.

유학생이 국자감에서의 학습 생활 중에도 당조정이 베푸는 보조를 받았다. 첫째, 신라 유학생은 당조정의 자금 도움 이외에 홍려시의 식비 보조도 받았다. “서적을 구입하는 은화는 본국(신라)에서 지급하고 학습하는 서적과 양식은 당의 홍려시에서 공급하였다. 그러기에 학생의 가고 오는 자가 서로 끊어지지 않았다”³³⁾라고 하여 유학생에게 홍려시가 기본도서 구입과 식비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기록에도 이를 증명하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경종(敬宗) 보력(寶曆) 원년(825년) 5월에 신라 국왕 김언승(金彦承)이 상주하길 지

31) 《舊唐書》 권119 <日本傳>. 《舊唐書 外國傳 譯註》, 627쪽.

32) 貞元 21년(805년) 2월 6일의 기록. 《입당구법순례행기》, 109쪽.

33) 安鼎福, 《東史綱目》 권5(상), (Ⅲ), 민족문화추진회, 1978, 112쪽. 《嚴耕望史學論文集》, 937쪽.

금 대학생 최이정(崔利貞), 김숙정(金叔貞), 박계업(朴季業) 등 4명은 본국으로 귀환을 청했다. 새로 입조하여 조공을 바친 김윤부(金允夫), 김입지(金立之), 박량지(朴亮之) 등 12명이 당 궁정에 숙위하고 국자감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기를 청하니 흥려시에서 식비(양식)를 제공했다³⁴⁾라고 하였고, 문종은 개성 원년에 칙령을 내려 “신라 숙위생과 왕자 김의종(金義宗)은 학생 인원으로 머무르길 청하니 옛 관례에 따라 이 두 명의 체류를 허가하고 옷과 식비를 관례에 따라 지급한다³⁵⁾”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당조정은 유학생에게 생활 보조로 숙식 이외에 유학 생활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비용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당조정은 유학생에게 사계절에 필요한 옷도 제공하였다. 상술한 《당회요》의 기록에 문종 개성 2년의 기록처럼 신라에서 파견된 숙위 왕자에게 계절별 옷과 양식을 지급한 것 이외에 중국 각지의 사원에 파견된 유학생에게도 당조정에서는 “매년 비단 25필을 하사하고 계절별 옷을 지급하였다³⁶⁾”라고 하였는데 대우는 구체적으로 다른 사료에 ‘급시복(給時服)’이란 항목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급시복 한 벌이란 봄과 가을 도포 한 벌, 비단 한삼(汗衫) 한 벌, 두건 하나, 흰 비단 바지 하나, 가죽신 한 켤레, 양털 담요인데, 여름에는 삼 대신 도포, 홑 바지 대신 겹바지, 나머지는 봄과 가을철과 같으며, 겨울에는 도포에다 솜 10냥, 저고리 8냥, 바지 5냥이다.”³⁷⁾ 유학생은 당조정으로 부터 계절별로 의복류의 물품을 배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겨울철에는 목탄의 보조가 있었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당조정은 유학생에게 3개월의 목탄을 지급하여 방한과 난방을 도왔다. 상서성(尙書省) 공부(工部) 우부사(虞部司)는 주로 이 항목의 지출을 담당하였다. “떨

34) 《冊府元龜》 권999 <外臣部> <請求>, 《冊府元龜》(十二), 11724쪽 하단. 唐敬宗 寶曆 원년은 825년이고, 金彦承은 신라 제41대 국왕으로 809~826년까지 재위하였다. 790년(원성왕 6년)에 大阿飡를 제수 받아 唐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東史綱目》 제5(상), (III), 민족문화추진회, 1978, 73-74쪽.

35) 《唐會要》 권36 <附學讀書>, 《唐會要》(上), 779쪽.

36) 《唐大和上東征傳》, 45쪽.

37) 仁井田陞, 《唐令拾遺》, 長春出版社, 1989, 786쪽.

나무와 숲, 장작을 궁중에 바치고 백관(百官), 번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모두 농한기에 낸다. 백관과 번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11월에 시작해서 정월에 마친다.”³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왕조 중앙행정기구의 중심인 3성 6부 외에 구시(九寺)가 있는데 이 가운데 사농시(司農寺) 안에 설치된 구순서(鉤盾署)는 땀나무와 숲 등을 제사, 조회, 빈객에게 지급하는 일을 관장하는 부서였다. 이 부서에서 “외국 사신이 객관에 있는 경우 제1등급의 사람에게는 1일에 3근을 지급하고 이하는 각기 차등을 두었다”³⁹⁾

이외에 당조정은 유학생에게 다른 부서에도 대우를 해주었는데, 홍려시의 전객서(典客署)에서 “외국 사신이 5품 이상 관리의 경우 휘장, 담요, 자리를 지급하며, 6품 이하인 경우는 천막과 식료를 지급한다.”⁴⁰⁾ 또 “타고 온 사축(私畜)은 객사에서 끌어내 방목하고 헤아려 사료를 지급하였다.”⁴¹⁾ 서북 이민족은 유목민족이므로 양탄자는 필수품으로 특별히 그들의 생활풍속을 고려하여 지급된 것이며 중국에 올 때 타고 왔던 사적인 말을 사육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공비 의료와 장례

유학생이 학습 기간에 의료, 장례 사무는 홍려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안배하였다. 《구당서》 기록에 의하면 번객이 입조한 기간에 “예를 들어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면 일을 헤아려서 비용을 지급하였다”⁴²⁾라고 하였고, 《구당서》에도 이러한 사무를 홍려시에 예속된 전객서(典客署)에 규정하도록 하였는데, “만약 질병이 있으면 담당 관사는 의원을 보내 탕약을 지급한다. 만약 사망한 경우 주사(主使)과 부사(副使) 및 제 3등 이상의 관리라면 황제에게 알려야 한다. 장례에 필요한 물품은 담당 관사가 헤아려 지급하며, 본국으로 귀

38) 《唐六典》 권7 <尙書工部>. 《역주 당육전》(상), 684쪽.

39) 《唐六典》 권19 <司農寺> <鉤盾署>. 《역주 당육전》(중), 618쪽.

40) 《唐六典》 권18 <鴻臚寺>. 《역주 당육전》(중), 579쪽.

41) 《唐六典》 권18 <鴻臚寺>. 《역주 당육전》(중), 578쪽.

42) 《舊唐書》 卷44, <職官志>(三), <鴻臚寺>. 《舊唐書》(10), 1885쪽.

환을 원한다면 수레를 지급하여 국경까지의 운송을 책임졌고, 수령이 제 4등 이하이면 주문하지 않고 다만 수레와 소를 보내 묘지까지 보낸다⁴³⁾라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유학생의 질병 치료와 사망은 관아와 조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대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질병 치료와 장례를 치를 비용 모두 관련 부서에서 지급하였고 사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본국 송환을 원하지 않으면 사자의 지위가 너무 낮아 본국 송환을 원치 않는 경우의 차이가 있었다.

개원 연간에 발해국(渤海國) 숙위 왕자가 당나라에서 죽었는데 장례 사무는 당조정에서 안배하였다. “비단 3백 필, 조 3백 석을 하사하고 관아에 명하여 장례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본국으로의 운구 운송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⁴⁴⁾”라고 하였다.

천보 8년(749년), 당조정은 입조한 변객의 장례 사무의 변경을 규정하였는데 “소무구성(昭武九姓)과 견곤(堅昆) 등의 변객은 입조하여 죽으면 오늘부터 1백 관(貫)의 장례비를 지급하고 묘지는 주현에서 매입하는데 관에서 지급한다. 문묘를 만들어준다⁴⁵⁾”라고 하였다. 변객이 당나라에 들어온 뒤 사망하면 묘지는 당조정에서 출자하여 매입하고 분묘도 주현에서 책임지고 만들었다. 당조정은 지위에 따라 장례비를 조정했으며 변객은 본국으로 송환하지는 않았다.

④ 본국으로의 귀국 보조

당왕조 주변의 국가들이 사신을 파견하면 변객이 되는데 당조정에서는 그들에게 비용을 지급하였다. “성력(聖曆) 3년(700년), 3월 6일 칙서에 동쪽으로 고려(高句麗), 남쪽으로 진랍(眞臘), 서쪽으로 페르시아, 토번 그리고 견곤도 독부, 북쪽으로 거란과 돌궐, 말갈은 입조하여 변객이 되는데 규정에 따라 마땅히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하였고, 또 “개원 4년, 정월 9일에 칙서에 말갈, 신라, 토번이 매년 사신을 파견하는데 7천 리를 기준으로 급료를 하사하는 것

43) 《唐六典》 卷18, <鴻臚寺>, 《역주 당육전》(중), 579쪽.

44) 《冊府元龜》 卷975, <外臣部>, <褒異>, 《冊府元龜》(十二), 11451쪽 하단

45) 《唐會要》 卷66, <鴻臚寺>, 《唐會要》(下), 1361쪽.

을 허락한다”라고 하였다.⁴⁶⁾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나라마다 달랐다. 《당회요》에 “증성(證聖) 원년(695년), 9월 5일 칙서에 번국의 사신이 입조하면 양식을 차등하여 지급하였다. 남천축(남인도), 북천축(북인도), 페르시아, 대식국의 사신에게 6개월, 스리비자야(수마트라), 진랍(크메르), 아릉(阿陵 인도)의 사신에게는 5개월, 임읍의 사신에게는 3개월의 양식을 지급한다”⁴⁷⁾라고 하였다. 중국에서 가장 먼 페르시아, 대식국, 인도의 여러 나라의 유학생에게는 6개월의 여비와 양식을 보조했고 가장 가까운 지금의 베트남의 임읍에서 온 유학생에게는 3개월분을 보조비로 지급했다.

유학생의 귀국 노선도 국가마다 서로 다 달라서 여비와 양식비용에도 차등하여 지급하였다. “귀국길이 큰 바다를 지나는 경우는 양과 돼지 각각 한 마리씩을 간청하여 지급하였다. 서남 번국의 사신이 귀국할 때는 바다를 지나는데 필요한 여비와 양식을 지급하였고, 서북의 번국의 사신에게는 사막을 건너는데 필요한 여비와 양식을 지급하였다.”⁴⁸⁾ 육로와 해로로 귀국하는 유학생이 배정받는 여비와 양식에는 차이가 있었고, 해로를 이용하여 귀국하는 유학생을 특별히 배려하였는데 출항하기 전에 제사용으로 돼지와 양을 희생으로 사용하였다. 당시에는 해상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했다. 일본 유학생의 경우 통계에 의하면 22차례 건당사 파견으로 바다를 건너는데 사고 발생률이 반은 되었다. “배가 파손되거나 조난의 경우가 있었는데 갈 때 7차례나 되어 배를 6척이나 잃어버렸고, 돌아올 때도 6차례나 있었고 4척을 잃어버렸다. 바람 때문에 중지된 경우는 갈 때 한 차례로 모두 14차례나 있었다. 갈 때 무사고는 12차례 있었고 돌아올 때 무사고는 10차례로 모두 22차례 왕래하였다.”⁴⁹⁾

46) 《唐會要》卷100, <雜錄>. 《唐會要》(下), 2136쪽.

47) 《唐會要》卷100, <雜錄>. 《唐會要》(下), 2136쪽.

48) 《新唐書》卷36, <百官志>(一). 《新唐書》(11), 1196쪽.

49) 池步州, 《日本遣唐史簡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년, 47쪽. 중국의 승려 鑑眞은 日本 奈良 시대에 律宗을 전파한 당나라의 승려(688~763)로 753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왕의 보호를 받으며 율종을 전파하고, 왕족과 고관들에게 수계를 베풀었으며 또 중국의 의약도 일본에 전해주어 일본에서는 ‘의약의 시조’로 추앙받는 인물이다. 개원 21년(733년)에 일본 승려 榮睿와 普照가 건당사를 따라 중국에 유학했는데 일본은 그 답례로

이 밖에 당조정은 적극적으로 귀국 도중 위험에 처한 유학생을 구조하고 재차 귀국을 도왔다. 개원 22년(734년), “천평(天平) 4년 8월 정해, 종사위상 다치비진인광성(多治比真人廣成)을 견당대사(遣唐大使)로 삼았다. 5년 3월 무오, 견당대사 다치비진인광성 등이 배조(拜朝)했다. 계사, 견당대사 다치비진인광성이 당나라로 가기 전에 하직 인사를 했다. 전권(全權)을 위임하는 절도(節刀)를 주었다. 여름 4월 기해, 당나라로 파견되는 배 네 척의 배가 난파진(難波津)에서 출발했다. 6년 11월 정축(丁丑), 입당대사(入唐大使) 종사위상(從四位上) 다치비진인광성(多治比真人廣成) 등이 다네도(多禰島)에 도착했다.”⁵⁰⁾ 일본인 사절단이 귀국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그 가운데 진인광성(真人廣成)이 탄 배가 임읍국에 닿았다. 후에 광주의 관원이 상주하여 천자가 조서를 내려 안남도호부와 임읍국이 접촉하고 조정을 통해 결국 조난 인원 구조에 성공하여 이들은 다시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이 일은 장구령(張九齡)의 <칙일본국왕서(敕日本國王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⁵¹⁾

(2) 유학생의 정치 권리

① 비 고시 출신 국가공무원

당대에 수많은 번객이 관리가 되었다. 《책부원구》의 기록에 신라 질자 김사신(金士信)이 상주하길, “신의 본국이 천자에 조회한 지가 2백 년이 되었는데 일찍이 질자를 파견하면 당조정이 숙위생에 임명하고 매일 조정에 번속 국가의 부사(副使)로 출사하면 조정은 성지(聖旨)를 전달하였습니다”⁵²⁾라고 하

揚州 大明寺 주지 감진을 초청하였다. 감진은 천보 2년(743년)에 그의 제자 祥彦, 道興과 함께 동쪽 바다를 건너다가 10년 동안 5차례나 바다의 거센 풍랑을 만났는데 어떤 경우는 14일 동안을 표류하다가 海南島에 닿은 적도 있었다. 천보 12년(753년), 그의 나이 66세 때 黃泗浦, 지금의 강소성 張家港에서 출항하여 6차 항해로 일본 큐슈 鹿兒島에 닿은 후 이듬해에 일본의 수도 平城京, 지금의 奈良에 도착하였다. 감진의 동도를 통해 당시의 해로교통로는 위험한 항해였음을 알 수 있다.

50) 《續日本紀》卷11. 卷11은 天平 3年 正月부터 6年 12月까지이다. 《속일본기》(2), 28-58쪽.

51) 《全唐文》卷287. 《全唐文》(二), 1286-1287쪽. 林邑國에 대해서는 주(12) 중간 부분을 참조.

었다. 부사관 외국에 파견된 정사(正使) 혹은 공사(公使)의 조수를 말한다.

② 과거 출사

진사과(進士科)는 당왕조 과거시험 중 가장 중요한 과목인데 국자진사(國子進士), 향공진사(鄉貢進士), 빈공진사(賓貢進仕)로 나뉘었다. 세 번째 빈공진사는 주변 국가에서 온 ‘빈정(賓庭)’이 공물을 바친 인사가 과거시험에 합격한 진사를 말한다. 엄경망(嚴耕望)은 <신라유학생여승도(新羅儒學生與僧徒)>라는 문장에서 “당대는 과거시험으로 선비를 선발했는데 합격한 사람은 영예가 남달랐고, 외국 학생이 당나라에 머물며 공부하여 원하던 시험에 합격하여도 그 수준이 중국인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당조정은 특별히 빈공과를 설치하여 대우하였다”⁵³⁾라고 하였다. 《동사강목(東史綱目)》에도 장경(長慶) 초에 김운경(金雲卿)이 처음 빈공과에 합격하였다고 하면서 “김운경으로부터 당 말 때까지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모두 58인이며 오대(五代)의 양(梁)과 당(唐) 때에도 32인에 이르렀다”⁵⁴⁾라고 하였다. 당대 신라 유학생은 모두 58명이 빈공과에 합격한 셈이다. 빈공과 제도는 오대의 후량과 후당 때까지 시행되었다. 청대에 서송(徐松)이 출간된 《등과고기(登科考記)》에 당대 빈공과 합격한 진사 출신 가운데 신라 유학생은 최치원(崔致遠), 최신지(崔慎之), 김이오(金夷吾), 김가기(金可紀)와 이언승(李彦升) 등 여러 명이 기재되어 있다. 당대 빈공과 진사 중에 신라 유학생이 가장 많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대식국(아라비아), 발해국 유학생도 있었다.⁵⁵⁾ 고 하였다.

중국 주변 국가에서 온 유학생은 과거시험을 볼 수 있었고 합격하면 진사가 되었으므로 당조정에서 유학생에게 특별 대우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치원은 <계원필경서(桂苑筆耕序)>에서 “중국의 문물을 구경한 지 6년 만에 금방

52) 《冊府元龜》 卷996, <外臣部> <納貢>. 《冊府元龜》(十二), 11694쪽 하단.

53) 《嚴耕望史學論文集》, 937쪽. 《新唐書》, 《唐六典》 등의 사서에는 당대 과거 과목에 賓貢이란 과목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54) 제5(상), 《東史綱目》(III), 112쪽, 민족문화추진회, 1978, 112쪽. 여기에서 양과 당은 중국 역사에서 말하는 後梁과 後唐이다.

55) 楊希義, <唐代賓貢進士考>, 《中國唐史學會論文集》, 三秦出版社, 1993.

(金榜 과거급제자 명단)의 끝에 이름을 걸게 되었습니다⁵⁶⁾라고 하였다. 《동사강목(東史綱目)》에 “장경(長慶) 초에 김운경이 처음으로 빈공과에 합격하였다. 빈공과는 과거가 있을 때마다 항상 외국인을 위해 別試를 보여 방 끝에 이름을 붙였다⁵⁷⁾”라고 하였다. 고려인 최해(崔瀼)는 <송봉사이중보환조서(送奉使李中父換朝序)> 중에도 당대 빈공과 과거시험 제도를 소개하며 “소위 빈공과라는 시험은 매번 별도의 시험으로 합격자는 방 끝에 붙였다⁵⁸⁾”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당조정에서 유학생에게 과거시험에 참여하는 두 가지 특별 대우를 제공하였는데 하나는 매번 별도의 시험이 있었다. 빈공과의 시험 문제 출제는 단독으로 시행되었다는 뜻이다. 빈공과의 시험 문제는 다른 진사과 시험 문제와는 달랐다는 말로 시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른 하나는 합격자 명단을 방 끝에 부록으로 붙였다. 빈공 진사와 중국인의 진사과 합격자 명단을 함께 공시하였지만, 구별하여 예부에서 방을 붙일 때 빈공과 명단은 진사과 명단 끝에 부록으로 붙였다.⁵⁹⁾

외국 유학생이 과거에 합격한 후 당조정은 그에 상응하는 관직을 수여했다. 최치원은 당나라에 들어온 후 6년을 공부한 뒤 빈공과에 합격하였고, 877년에 선주(宣州) 울수(溧水)의 현위(縣尉)에 임명되었고, 4년 뒤 884년, 박학홍사과(博學鴻詞科) 시험에 합격하여 회남절도사(淮南節度使) 고병(高駢)의 종사관(從事官)을 지냈으며, 양주(揚州)에서 4년을 재직하면서 황소(黃巢)의 난이 일어나자 제도병마도통(諸道兵馬都統)에 임명되어 그 유명한 <격황소서(檄黃巢書)> 등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그의 재주는 고병과 희종(僖宗)의 격찬을 받아 희종이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에 봉하고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하였다. 희종 중화(中和) 4년(884년)에 그의 나이 28세 때 신라로 귀국하

56) 최치원 지음, 이상현 옮김, 《계원필경집》(1), 한국고전번역원, 2009, 66-67쪽.

57) 제5(상), 《東史綱目》(III), 112쪽. 민족문화추진회, 1978.

58) 《東文選》 卷84, 韓國民族文化刊行會, 1994, 163쪽.

59) 臺灣의 謝海平도 “빈공과 제도는 일반 과목과 달랐는데 그 특색은 별도의 시험으로 합격자 명단은 방 끝에 붙였다. 중국 주변 국가의 유학생은 본국 중국인에 미치지 못하므로 문제, 답안, 합격자 명단 모두 당나라 사람과 달랐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唐代留華外國人生活考述》, 臺灣商務印書館, 1978, 124쪽.

었다.

이 밖에 신라 유학생 중, 장경(821-824) 초에 빈공과에 합격한 김운경은 연주도독부(兗州都督府) 사마(司馬)에까지 관직이 이르렀고, 건부(乾符) 연간(874-879)에 빈공과에 합격한 김소발(金紹渤)은 대학박사(太學博士)를 지냈으며, 소종(昭宗 889-904) 중엽에 빈공과에 합격한 김문위(金文蔚)는 공부원외랑(工部員外郎), 기왕부(沂王府) 자의참군(子儀參軍)을 역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당조정의 어진 인재를 등용하여 관직을 맡기는 넓은 포용력을 실현한 것이었다.⁶⁰⁾ 심지어 번객에게 조정의 풍헌관(風憲官)과 같은 감찰관을 맡겨 도덕과 규범을 문란하게 하는 관리를 단속하여 풍기를 바로잡고 시비와 선악을 규찰하며 관리의 청탁과 비위 사실을 감찰하게 하였다. 최치원은 일찍이 시어사를 맡아 “태학에서 그의 명성이 자자했다.”

③ 국가 의식 참여

《통전》 <예전(禮典)>에 거의 모든 조정의 집회와 중대한 국가 의식의 활동에 번객들이 참여하였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설날 아침 정전에 모여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치에 관계된 일을 아뢰는 원회(元會), 황제와 관료의 상례(喪禮)에 관한 대당원릉의(大唐元陵儀), 황제의 동짓날 원구(圓丘)에서의 제사, 봄을 맞이하는 의식인 황제의 춘분(春分)에 조일(朝日), 난

60) 수당의 조정은 외국의 인재가 중국에 귀화하거나 귀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는데 그 예로 돌궐의 史大奈를 들 수 있다. 《新唐書》卷110, <諸夷蕃將>. 《新唐書》(12), 4130쪽. 史大奈는 突厥의 阿史那氏로 원래 西突厥 特勒이었다. 處羅可汗을 따라 隋나라에 입조하여 후에 功을 세워 金紫光祿大夫에 봉해졌다. 李淵이 太原을 때 그를 따라 장안을 평정하고 史氏 성을 하사받았다. 후에 秦王 李世民을 따라 薛舉, 王世充, 竇建德, 劉黑闥을 정벌하는데 적지 않은 공을 세웠다. 李世民이 卽位한 후, 右武衛大將軍, 檢校豐州都督에 임명되고 竇國公에 봉해졌다. 貞觀 年間에 세상을 떠났다. 사후에 輔國大將軍에 追贈되었다. 사대나가 北平府에 있을 때, 원래 그는 말을 파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여 사형 죄를 받아야 했다. 北平王 羅藝가 그의 재주를 애석해하여 順義莊에 무술 시합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 속죄할 기회를 주었다. 만약 백일 내에 그를 이길 사람이 없으면 죄를 면하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는 賈柳樓 四十六友의 하나가 되었다. 羅藝가 죽은 후, 瓦崗에 투항하였다가 후에 당나라 귀순하였다. 史大奈는 四十六友 가운데 열한 번째이다. 史大奈가 李世民을 따라 遼東에 출정했을 때 鳳凰山에서 齊國遠 등 26명의 總兵과 함께 모두가 고구려의 蓋蘇文에게 죽임을 당했다.

(鬘) 수레를 몰고 출궁, 황제의 태산 봉선(封禪) 의식, 황제의 태묘 황제의 군신 조회 하례 의식, 황후와 황태자 책봉 의식에는 번객이 모두 문무백관과 함께 참여해야 했다. 이러한 의식에는 유학생들도 본국의 복장을 하고 신분의 등급에 따라 순서에 맞춰 줄을 지어서 참여하였다.

④ 당나라 호적에 등재

《신당서》에 “신라, 일본 승려는 당나라에 와서 공부하는데 9년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았다”⁶¹⁾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는 당조정은 당나라 승적(僧籍)에 편입시켰다. 또 다년간 공부하고 귀국하지 않는 유학생도 당조정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장차 그들을 당나라 호적에 편입시켰다.

상술한 것처럼 덕종(德宗) 정원(貞元) 3년에 토변에 반란이 일어나 수많은 번객이 귀국하지 못하고 장안성에 머무르게 되었다. 많은 번객이 귀국하지 않고 당왕조의 우대정책으로 혜택을 누리다 보니 당조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재상 이필(李泌)이 번객의 자산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호객(胡客) 중에 밭과 집이 있는 자는 비용 지급을 정지하였는데 4천 명에 달하여 호객들이 정부에 호소하자 이필이 말하길, ‘이것 모두는 역대 재상들의 잘못된데, 어찌 외국 조공 온 사신들이 장안에 수십 년을 머물게 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땅히 회흘에게 길을 빌리거나 아니면 바닷길을 통해 각기 본국으로 귀국하게 해야 합니다. 귀국하길 원치 않는 자는 흉려시에서 스스로 설명을 하면 직위를 내릴 것이고 봉록을 지급해서 당나라 신하로 삼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때를 잘 타서 등용되어야 마땅하거늘 어찌 평생을 손님으로 있다가 죽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래서 호객은 한 사람도 귀국하길 원치 않아 이필은 신책(神策) 양군(兩軍)에 나누어 예측시켜 왕자와 사신은 산병마사(散兵馬使) 혹은 압아(押牙)가 되었고 나머지는 사졸로 삼게 하니, 금군은 더욱 건장하게 되었다”⁶²⁾라고 하였다. 귀국을 원하지 않는 번객은 모

61) 《新唐書》 卷48, <百官>(三). 《新唐書》(11), 1252쪽.

62) 《資治通鑑》 卷232, <唐紀>(48). 《資治通鑑》(24), 485-486쪽.

두 당나라 호적에 편입되었는데 이들 중에 왕자와 사신은 금군(禁軍)에 편입되어 군관(軍官), 유학생은 사졸이 되었다.

4. 결론

당왕조 경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자, 당조정은 특별히 외국인 이 거주하는 도시와 지역에 '번방(蕃坊)'을 설치하였다. 유학생은 일반 화외인 처럼 당나라 생활에 거주권(居留權)을 보유했다. 거주권은 유학생이 당왕조에서 누리는 기본적인 민사(民事) 권리였다. 유학생은 학습 기간에 국자감, 홍려시에 거주하며 공부했지만, 학업을 완료한 후에 일부는 당조정에 들어가 관리가 되었고 일부는 당나라에 남아 상업 활동에 종사하며 땅과 주택을 사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기르며 살기도 했다. 유학생이 당나라 여자와 결혼하여 자식까지 낳은 현상은 흔히 볼 수 있었다.⁶³⁾ 유학생의 민사권에는 이러한 거주권과 당나라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통혼권(通婚權) 이외에 당조정에서 실행되는 각종 예의 행사를 참관할 수 있는 유력권(遊歷權), 당나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시매권(市買權), 장사를 할 수 있는 경상권(經商權) 등도 있었다.

유학생에게 민사 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법률적 의무도 있었다. 유학생은 당왕조의 기본법률을 준수하고 또 본국의 습속법(習俗法)을 준수해야 했다.⁶⁴⁾ 이러한 일반 의무 외에 특별 의무도 있었다. 첫째, 사사로이 장안이나

63) 《資治通鑑》卷232, <唐紀>(48)에 “胡客이 장안에 오래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40여 년을 살았는데 처자식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唐玄宗이 총애한 일본 유학생 弁正은 還俗하여 당나라 여자와 결혼하여 朝慶, 朝元 두 아들을 낳았다. 일본 유학생 高內弓 역시 당나라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 廣成과 딸 綠兒를 낳았다.

64) 《唐律疏議》卷6, <名例>에 “모든 化外人은 자국인 간에 서로 범한 경우에는 당나라 법률과 다르므로 반드시 본국의 제도를 물어 그 풍속과 법률에 의하여 단죄한다. 타국인 간에 서로 범하였다는 것은, 예를 들어 고구려인과 백제 사람이 서로 범한 것과 같은 경우로, 모두 중국의 법률로 논죄하여 형량을 정한다”라고 하여 屬人主義와 屬地主義를 결합한 立法이었다. 《譯註 唐律疏議》(1)-名例編-, 342쪽.

지방의 주현(州縣)에서 당나라 관원이나 백성들과 접촉하고 왕래하지 못했다.⁶⁵⁾ 둘째, 유학생의 간첩 활동을 금지했다.⁶⁶⁾ 셋째, 허락 없이 흥려시를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⁶⁷⁾ 넷째, 중국 옷을 입지 못했다.⁶⁸⁾ 다섯째, 사사로이 장사하지 못했다. 유학생의 경상(經商)과 시매(市買)는 주객사(主客司)와 흥려시의 감독과 관리를 받았다.⁶⁹⁾ 여섯째, 유학생이 당나라 여자와 통혼할 권한은 있었으나 인구의 유실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제한하였다.⁷⁰⁾

결론적으로 당제국의 외국 유학생은 조정에서의 그들에 대한 혜택이 많았을

- 65) 《唐律疏議》卷8, <衛禁> <越度緣邊關塞>에 “외국의客이 입조하면 길에서 客과 交雜할 수 없고, 客이 중국 사람과 대화할 수 없게 한다. 州縣의 관리는 客과 서로 만날 수 없다”라고 하였다. 《譯註 唐律疏議》: 各則(上), 2091쪽.
- 66) 《唐律疏議》卷16, <擅興> <征討告賊消息>에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은 황제의 교화가 미치지 않는 외국인이 몰래 중국에 들어와 오고 가며 정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간첩행위 외에) 혹 서신을 전하여 내국인에게 주었거나, 그리고 (외국의 서신을) 받았거나, 간첩임을 알고서도 머무르는 것을 용인했거나 숨겨준 자는 모두 교수형에 처한다”라고 하였다. 《譯註 唐律疏議》-各則(上)-, 2356쪽. 당나라 법률에 유학생이 간첩 활동을 하다 붙잡히면 교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日本書紀》에 당나라가 백제를 공격할 때 당나라 조정에서는 일본 유학생이 정보를 전달하거나 기밀을 유출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왜인의 귀국을 금지했으며, 더 나아가 군사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일본 유학생을 장안에 연금하였다고 하였다. 《中日關係史資料匯篇》, 84쪽.
- 67) 《唐會要》권65, <鴻臚寺>. 흥려시 관원은 반드시 일정한 증명서를 지참해야만 마음대로 흥려시를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유학생은 관련 허가가 없으면 흥려시 출입이 제한되었다.
- 68) 《舊唐書》卷12, <德宗紀>에 흥려시에서 초청한 번객이 장안에 들어오면 각자 본국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 《舊唐書》(10), 322쪽.
- 69) 《唐律疏議》卷8, <衛禁> <越度緣邊關塞>에 “공적인 사신으로서 외국(蕃國)에 들어가거나, 외국인이 사신으로서 중국에 들어와서, 사사로이 매매, 교환한 자는 각각 장물을 계산하여 準盜로 논죄하고 그 최고형은 流刑 3千里이다”라고 하였다. 《譯註 唐律疏議》-各則(上)-, 2091쪽. 조정의 비준이 없는 사적으로 장사할 수 없었다. 《入唐求法巡禮行記》에도 2월 20일에 유학생 등 4명이 향약을 사기 위하여 배에서 내려 시장으로 갔으나 관계 관리가 조사하고 추궁하였기 때문에 도망하였다고 하였고, 2월 21일의 기록에는 대사의 겸종이 물건을 사기 위해 배에서 내려 시장으로 갔다가 관리에게 체포되어 관가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오늘 풀려났다고 하였으며 22일의 기록에도 시장에서 물건을 샀다가 체포되어 관가에 감금되었다고 하였다. 《입당구법순례행기》, 112-114쪽.
- 70) 《唐律疏議》권8 <衛禁> <越度緣邊關塞>에 “다른 格에 의하면 貞觀 2년의 조칙인 ‘외국의 사신이 혼인하여 중국 부녀를 얻어 妾으로 삼은 것은 결코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였다”라고 인용하였다. 여기에서 다른 格이란 《唐會要》卷100 <雜錄>의 기록을 말한다. 《譯註 唐律疏議》-各則(上)-, 2091쪽. 유학생은 관계 부서의 허가를 받아 당나라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다. 또 극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학생이 학업을 끝낸 후 당나라 여자인 처를 데리고 귀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 유학생 大春日淨足은 당나라 여자 李自然과 결혼하여 함께 일본으로 귀국하였고 日皇이 그에게 5품의 관직을 수여하였고 후에 두 사람은 다시 당나라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 권리와 의무 및 행동에 제한도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 參考文獻 >

- 李昉 等編, 《文苑英華》, 北京: 中華書局, 1966.
- 謝海平, 《唐代留華外國人生活考述》, 台灣: 臺灣商務印書館, 1978.
- 眞人元開 著, 汪向榮 校注, 《唐大和上東征傳》, 北京: 中華書局, 1979.
- 木宮泰彥 著, 胡錫年 譯, 《日中文化交流史》, 上海: 商務印書館, 1981.
- 顧樹森, 《中國歷代教育制度》, 江蘇: 江蘇教育出版社, 1981
- 池步洲, 《日本遣唐使簡論》, 上海: 上海社會科學出版社, 1983.
- 長孫無忌 等撰, 《唐律疏議》, 北京: 中華書局, 1983.
- 姚嶂劍, 《遣唐使》, 陝西: 陝西人民出版社, 1984.
- 汪向榮·夏應元 編, 《中日關係史資料匯編》, 北京: 中華書局, 1984.
- 강무학 역해, 《삼국사기신강》-연표·열전·잡지판-, 서울: 청화, 1985.
- 王向榮, 《中日關界史文獻論考》, 湖南: 岳麓書社, 1985.
- 梁容若, 《中日文化交流史論》, 台灣: 臺灣商務印書館, 1985.
- 楊榮春, 《中國封建社會教育史》, 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85.
- 仁井田陞, 栗勁 等譯, 《唐令拾遺》, 長春: 長春出版社, 1989.
- 田溶新 譯, 《完譯 日本書紀》, 서울: 一志社, 1990.
- 陳尙君,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92.
- (唐) 李林甫 等撰, 《唐六典》, 北京: 中華書局, 1992.
- 《東文選》, 韓國民族文化刊行會, 서울: 1994.
- 《譯註 唐律疏議》(I)-名例編-, 金鐸敏, 任大熙 主編, 한국법제연구원, 1994.
- E. H. Schafer, *The Golden Peaches of Samarkand: A Study of Tang Exotics*, 『唐代的外來文明』,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 何茂春, 《中國外交通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 《譯註 唐律疏議》: 各則(上), 金鐸敏, 任大熙 主編, 서울: 서울한국법제연구원, 1997.
- (宋) 范曄 撰, (唐) 李賢 等注, 《後漢書》(3), 二十四史, 北京: 中華書局, 1997.
- (後晉) 劉昫 等撰, 《舊唐書》(10)(11), 二十四史, 北京: 中華書局, 1997.
- (宋) 歐陽修·宋祁 等撰, 《新唐書》(11)(12), 二十四史, 北京: 中華書局, 1997.

- 黎虎, 《漢唐外交制度史》, 蘭州: 蘭州大學出版社, 1998.
- 《譯註 唐律疏議》: 各則(下), 金鐸敏, 任大熙 主編,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8.
- 李昉 等編, 김장환, 옴김, 《太平廣記》, 서울: 學古房, 2000.
- 宋大川·王建軍, 《中國教育制度通史》, 山東: 山東教育出版社, 2000.
- 엔닌 지음, 김문경 역주, 《입당구법순례행기》, 서울: 중심, 2001.
- 拜根興, 《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史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 김택민 주편, 《역주 당육전》(상)(중)(하), 서울: 신서원, 2003.
- (宋) 宋敏求 編, 《唐大詔令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 (宋) 王溥 撰, 《唐會要》(上)(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 張振聲, 《中日關係史》,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 魏志江, 《中韓關係史研究》, 廣州: 中山大學出版社, 2006.
- 古瀨奈律子 著, 鄭威 譯, 《遣唐使眼里的中國》, 湖北: 武漢大學出版社, 2007.
- (清) 董浩 等編, 《全唐文》,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 (宋) 王讜 撰, 周勛初 校證, 《唐語林校證》(上)(下), 北京: 中華書局, 2008.
- (宋) 司馬光 지음, 권중달 옴김, 《자치통감》, 서울: 삼화, 2009.
- 嚴耕望, 《嚴耕望史學論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9.
- 최치원 지음, 이상현 옴김,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09.
- 최치원 지음, 이상현 옴김, 《고운집(孤雲集)》,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2009.
- 동북아역사재단 편, 《舊唐書 外國傳 譯註》(上)(下),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 동북아역사재단 편, 《新唐書 外國傳 譯註》(上)(下),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 동북아역사재단 편, 《구당서 외국전》(하),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 (복송) 王欽若 等編, 《冊府元龜》(12冊), 北京: 中華書局, 2012.
- 菅野眞道(스가노노 마미치) 外, 이근우, 《속일본기》(2), 서울: 지식올만드는지식, 2012.
- 閻立明, <崔致遠與九世紀後半期的唐羅關係>, 延邊大學碩士論文, 2006.
- 張森森, <唐代化外人的法律地位述論>, 蘇州大學碩士論文, 2006.
- 白俊峰, <中國涉外法律發展考論>, 中國政法大學碩士論文, 2006.
- 周寧, <唐朝涉外法律制度研究>, 山東師範大學碩士論文, 2009.
- 高樹異, <唐宋時期外國人在中國的法律地位>,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1期, 1978.
- 戴禾, <唐代來長安日本人的生活活動和學習>, 《陝西師範大學學報》1期, 1985.
- 劉海峰, <試論唐代文化教育的開放性>, 《福建論壇》5期, 1987.
- 薛平拴, <論唐代的胡商>, 《唐都學刊》3期, 1994.

- 蘇欽, <唐明律化外人條辨析>, 《法學研究》 5期, 1996.
- 方亞光, <唐代對外開放述論>, 《江蘇社會科學》 6期, 1997.
- 何波, <吐蕃子弟留學唐國子監述論>, 《青海社會科學》 5期, 1999.
- 王春芳·李修松, <入唐求學蕃客及其管理>, 《六安師傳學報》 4期, 2000.
- 劉敏, <唐代儒學生教育的興盛及其影響>, 《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 2期, 2002.
- 鄭顯文, <唐代涉外民事法律初探>, 《北京科技大學學報》 3期, 2003.
- 姜清波, <新羅對唐納質宿衛述論>, 《中國邊疆史地研究》 1期, 2004.
- 榮新江, <從井真成墓志看唐朝對日本遣唐使的禮遇>, 《西北大學學報》 4期, 2005.
- 王勇, <井真成墓志與唐國子監>, 《日本學刊》 2期, 2006.
- 韓昇, <井真成墓志所反映的唐朝制度>, 《復旦學報》 6期, 2009.
- 耿虎, <新羅日本遣唐留學比較研究>, 《廈門大學學報》 3期, 2010.

< Abstract >

A Study of the Foreign Students Control and Management System
in Tang Dynasty

Lee, Haewon

The Tang dynasty was one of the most cosmopolitan in Chinese history. The princes as a hostage and students, including monks from foreign countries came to China. The three most important kinds of visitors were the envoys, clerics, students except merchants. They stayed as the palace guard and studied Chinese culture at school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and organizations.

Foreign students consisted of diplomatics, clerics, students, foreign envoy, guest. Tang government offered free tuition, assisted their living allowance, provided free for clothing expenses, medical expenses and funeral costs, assisted to return to their countries.

The political rights were granted to the foreign students. After passing the

national examination, the successful candidates went into government service, participated in national ceremonies, and registered census registration.

Foreign students exercised their own rights of civil affairs and assumed the legislative duties. They were not allowed wearing Chinese clothes, and could marry with Chinese women, but placed strict restrictions, and not permitted to do business.

Key words: Tang Dynasty, palace guard hostage, foreign students, free for tuition and living expenses, entering into government servic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10. 30	2020. 11. 4 - 11 .24	2020. 11. 27	2020. 12. 7	2020. 12. 31